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은 계산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frac{10(\text{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의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u>. 다만, 주당 단축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은 계산하지 아니하며</u> -----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5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에 × -----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에 × -----
해당하는 금액(200 공무원의 주당	해당하는 금액(200 공무원의 주당
만 원을 상한액으로, 근무시간	만 원을 상한액으로, 근무시간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의 주당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의 주당
× 근무시간 -	× 근무시간 -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의 시간선택제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의 시간선택제
80퍼 센트에 해당하는 전환공무원	80퍼 센트에 해당하는 전환공무원

금액(150만원을 상한액 으로, 50만원을 하한액 으로 한다) 주당 근무시간 - 5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금액(150만원을 상한액 으로, 50만원을 하한액 으로 한다) 주당 근무시간 - 10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